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7월 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7월10일) 상정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7월10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개정이유

○ 2003. 5. 1자 표준정원제 관련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고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조직진단 결과와 기능보강이 필요한 각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 금회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조직과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경제통상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변경함(안 제5조)

○ 문화예술과를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조정함(안 제5조)

○ 시 본청 행정지원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

○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소속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 민원허가과를 시민봉사과로, 국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교통지도사업소에 방치차량처리팀이 신설되는데 주차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선지?	○ 방치차량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신설하였으며, 공익, 행정요원을 증원하여 방치차량 단속에 최선 다할 것임
○ 체육청소년과는 복지분야가 아니라 문화분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별 과 안배와 구청 사회복지과 청소년업무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구청 지역경제과의 녹지팀을 건설과로 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 단위는 6급 팀장을 4명 이상 두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상 차이가 있으나 현재대로 했습니다
○ 이 조례안은 어떤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 사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0팀이 장기간 걸쳐 토의하고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계선조직상 결재를 통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 불법광고물,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시킬 의향이 있는지?	○ 현재 불법광고물, 청소관련 업무는 전담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관문제는 대해서 차후 검토해보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본청의 과 단위까지만 하는 것으로 과 단위 이하와 구청의 과, 팀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직 개정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본청의 팀과 구청 과,팀을 조정할 시 시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 요망

○ 또한 향후 조직 신설등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등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행규칙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요망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46호
의 결 년월일	2003. 7. 5 (제105회)

제출년월일 : 2003. 7. 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2003. 5. 1 표준정원제 관련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고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조직진단 결과와 기능보강이 필요한 각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 금회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조직과 인력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건설 전담기구를 복지환경국 산하에 두고 시민복지증진 차원에 역점을 두어 5대문화사업,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왔으나

○ 우리시에 구축된 성숙한 문화, 예술자원을 고부가 가치의 지식기반 산업과 연계하는 경제문화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급변하 는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통상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문화예술과를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조정함.**(안 제5조)

○ 한시기구등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3개구청 주민자치과 폐지에 따른 자치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시본청 주민자치과를 행정지원국에 신설함.**(안 제7조제1항)

○ 시본청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기능 재조정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소속변경함.**(안 제10조제1항)

○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을 위해 **민원허가과를 시민봉사과로, 국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경제통상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민원허가과”를 “정보관리과, 시민봉사과, 주민자치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교육·민방위”를 “교육”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원행정 및 차량관리·등록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민간협력·민방위·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과) ①경제문화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문화예술과를 둔다.

②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유통·실업대책·공공근로·노정·가스·에너지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입지지원·기술지원·공업인허가·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식산업·만화산업·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중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를 “환경위생과, 체육청소년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진흥·체육시설·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주민자치과 관련 사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적용시한) 시본청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의 기구설치 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의설치)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기획세무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5조(국의설치)①----------경제문화국----------.
제7조(행정지원국에 두는과)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민원허가과를 둔다. ②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복무·인사·시정시책·선거·조직 관리·교육·민방위 업무에 관한사항 2.(생 략) 3. 체육진흥·체육시설·청소년육성·사회진흥에 관한사항 4.(생 략) 5.민원행정 및 민원허가에 관한사항 〈신 설〉	제7조(행정지원국에 두는과)①----------정보관리과, 시민봉사과, 주민자치과--. ②----------. 1. ----------교육 ---------- 2.(현행과 같음) 〈삭 제〉 4.(현행과 같음) 5. 민원행정 및 차량관리·등록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민간협력·민방위·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통상국에 두는과)①경제통상국에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과를 둔다. ②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지원·품질관리·경제·입지지원 및 지원관리에 관한사항 2. 지식산업·문화산업·유통에 관한사항 3. 무역진흥·국제교류·협력·통상·외자유치에 관한사항 4. 실업대책·공공근로·노정에 관한사항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과)①경제문화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문화예술과를 둔다. ②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유통·실업대책·공공근로·노정·가스·에너지에 관한사항 2. 중소기업지원·입지지원·기술지원 및 공업인·허가 등 무역진흥에 관한사항 3. 지식산업·만화산업·문화산업에 관한사항 4. 문화예술에 관한사항
제10조(복지환경국에 두는과)①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2.(생 략) 3.문화예술에 관한사항 4.(생 략) 〈신 설〉	제10조(복지환경국에 두는과)①----------환경위생과, 체육청소년과---. ②---------- 1. ~ 2.(현행과 같음) 〈삭 제〉 4.(현행과 같음) 5. 체육진흥·체육시설·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